

2026-1학기 대학원 「현장연구」 강좌 운영 계획(안)

I 목적 및 근거

- 「현장연구 교과목 운영세칙」
- 「대학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」 제3조(공동교과목)
-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산업·사회 현장과 대학원 교육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연구기관, 산업체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하는 현장 밀접형 교육과정 필요
- 현장연구 과목 취득을 통한 대학원생 실무 역량 강화 및 체계적 현장연구 역량 배양
- 대학과 현장연구기관 간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 역량 강화 및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도약

II 현장연구 교과목 개요

□ 개요

교과구분	교과목명(영문명)	학수번호	학점	수강대상
대학원공통 (전공선택)	현장연구 I (Field Research I)	A11066	3학점	일반대학원생
	현장연구 II (Field Research II)	A11067	3학점	일반대학원생
	현장연구 III (Field Research III)	A11068	3학점	일반대학원생
	현장연구 IV (Field Research IV)	A11069	3학점	일반대학원생

※ 단계별 순차 이수 방식으로 운영 (현장연구 I → II → III → IV 순으로 이수)

□ 교과목 세부내용

- (현장연구 I) 전공 관련 연구기관, 산업체의 현장수요를 분석한 결과 보고서* 작성
* 수강 학기 내 90시간 이상의 현장 연구일지 포함
- (현장연구 II) 현장연구 I 과 연계하여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과제*를 수행하고 연구 결과 보고서 작성
* 현장연구 I 기관과의 공동연구과제에 한함 (연구비 천만원 이상, 연구기간 15주 이상 / 연구과제 종료시점 속하는 학기를 필히 확인하여 수강신청 바람)
※ 공동연구과제의 연구비 천만원 이상 조건에 대하여 국제교류본부가 별도 선발하는 해외대학 교직원 대학원 학위과정 프로그램 참가 학생은 예외
- (현장연구 III) 현장연구 II와 연계하여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논문게재* 또는 특허 등록**
* KCI 후보지 이상 또는 SCIE에 준하는 저널 / 수강생이 주저자인 경우에 한함

** 수강생이 **발명자**에 포함되고 출원인 명의가 대학(산학협력단)인 경우에 한함

○ (현장연구Ⅳ) 현장연구Ⅲ와 연계하여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**기술이전*** 또는 **창업**

* 계약당사자가 대학(산학협력단), 기술료가 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

Ⅲ 추진일정

① 수강신청 및 정정

- 신청기간: '26. 2. 11.(수) ~ 2. 13.(금) 및 '26. 3. 3.(화) ~ 3. 9.(월)
- 신청방법: 수강신청시스템 접속하여 대학원공통 탭에서 '현장연구' 과목 수강신청 (소속학과에 현장연구가 개설된 경우 해당 과목으로 신청 가능)
- ※ 수강신청 시, 하단 2번 제출 서류 안내 팝업 표출 예정

② 현장연구 기관 관련 서류 제출

- 접수기간: '26. 2. 20.(금) / '26. 3. 9.(월)까지
- 제출방법: 대학원 수업담당자에 **이메일** 제출 (sue17@pknu.ac.kr)
- 제출서류: 현장연구 수강승인 신청서(붙임), ^(학생)4대보험가입확인서, ^(기관)사업자등록증*,
(현장연구2에 한해) 연구과제 참여확인서 등 참여 증빙이 가능한 자료
- * (사업자등록증) 단, 법령에 의해 공공연구기관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 불요
- ※ 현장연구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해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

③ 현장연구 기관 적합성 검토

- 검토기간: '26. 2. 25.(수) / '26. 3. 11.(수)까지
- 검토주체: 대학원행정실 (필요 시 관련 부서의 검토, 심의를 통해 결정)
- ※ 현장연구의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관*은 수강 승인을 제한할 수 있음
- *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, 업력 1년 미만, 교육 및 연구 인프라 부족 기관 등

④ 현장연구 수강 대상자 안내 및 수강취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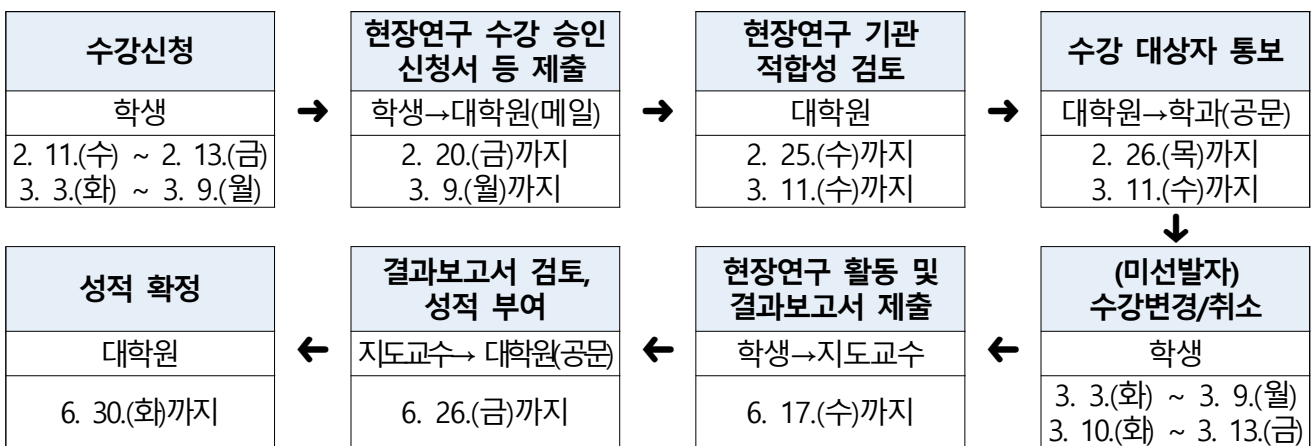
- 현장연구 수강 대상자 안내: '26. 2. 26.(목) / '26. 3. 11.(수) 공문 발송
- 수강변경 및 수강취소기간: '26. 3. 3.(화) ~ 3. 9.(월) / '26. 3. 10.(화) ~ 3. 13.(금)
- 수강대상자로 선발 된 경우 현장연구를 추진하고, 수강대상자로 미선발 된 경우는 수강변경 및 취소기간에 수강신청내역 삭제 (수강변경 및 수강취소기간 외에 수강취소 불가)

⑤ 현장연구 활동: '26. 6. 17.(수)까지

⑥ 지도교수 검토 및 성적 부여

- 기간: '26. 6. 17.(수) ~ 6. 26.(금)
- 성적기준: 절대평가 / 등급제 (「학칙」 제60조(성적) 참조)
- 성적부여: 학기 말 지도교수가 현장연구 결과보고서 및 실적을 검토·심사하여 결과보고서에 최종 성적 등급 부여
- 현장연구 실적자료 및 결과보고서(최종 등급 기재 포함)를 대학원행정실에 공문 제출

□ 추진절차 (요약)



※ 상기 추진일정은 계획안이며, 대학 운영상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IV 기타

□ 현장연구 기관 요건: 교육 및 연구 수행이 가능하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된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

□ 현장연구 불가 기관

가. 4대보험 체납 사업장

나.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 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가 운영하는 기업

다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

라. 사업장 내 성희롱 등의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

마. 기타 현장연구 취지와 목적,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

- 소비, 향락업체, 근로자 파견 및 근로자 공급을 주로 하는 용역업체
- 계절적, 일시적 인력수요를 필요로 하는 사업체 및 다단계 판매업체

- 학생이 소속된 학교 및 산학협력단
- ※ 학생이 소속된 학교 및 산학협력단은 실습기관에서 제외하나, 학교 및 산학협력단과 다른 사업자등록번호의 학교기업, 센터, 연구소 등은 실습기관으로 인정
- 바.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
- 사. 별도 법령 등에 따른 의무실습 기관(기업)
 - 「선박지원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승선실습, 「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」에 따른 교육 실습,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, 「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,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보육 현장실습
- 아. 교육·연구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나 상시적인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단체 또는 일시적 행사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조직
- 자. 기타 교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
□ 유의사항

- 현장연구 기관 변경 시 사전 승인 필요 (대학원행정실 사전 문의)
- 현장연구 활동 중 **안전사고** 발생 시 즉시 지도교수 및 대학원행정실 보고
- 현장연구 기관과의 **기밀유지·연구윤리** 준수 및 해당 기관의 내부규정 및 지침 준수
- 지도교수는 학생의 연구진행 상황에 대한 체계적 관리·감독을 통해 질적 수준 향상과 원활한 연구 수행을 도모하며, 필요시 안정적으로 연구를 완수할 수 있도록 지원
- 대학원은 현장연구 교육과정에 대한 학점 인정·승인기관이며, 현장에서의 실제 연구 활동 및 그에따른 관련 제반 사항은 학생, 교원 및 해당 연구기관의 책임 하에 수행
- 수강 승인 후에도 연구기간 중 부적합 사항 발견 시 추가 서류 징구 및 **성적 미부여** 가능
- 대학원행정실 외 각 학과에서 개설한 현장연구 교과목도 상기 방법으로 추진·운영
- 학기 중 **연구 중단** 시, 수강취소·성적삭제 처리가 불가하므로 신중한 검토 후 신청 요망
- 현장연구 관련 재정지원사업(RISE사업, BK21사업 등)은 각 사업단에 문의

- 붙임 1. 현장연구 수강 승인 신청서 1부.
2. 현장연구 결과보고서 양식 각 1부.
3. 현장연구 교과목 운영세칙 1부. 끝.